##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686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8.

발 의 자:김승원・이기헌・김현정

이원택 · 조계원 · 이건태

박균택・박지원・서영교

박해철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을 할 의무가 있고, 초·중등 및 평생교육 교육과 정과 공무원 연수과정 등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군인권교육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관계 기관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함.

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의자·피해자 등 국민의 인권침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,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의 인권교육을 권고 내지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위원회는 법무부장관, 검찰총장·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 관의 장과 인권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 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 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·예방하기 위한 위원회의 인권 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26조제1항 및 제8항).

법률 제 호

##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 중 "위하여"를 "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·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법무부장관, 검찰총장·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인권교육과 홍보) ① 위원	제26조(인권교육과 홍보) ①
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	
깨우치고 향상시키기 <u>위하여</u>	<u>위한 시</u>
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	책을 수립·시행하고
여야 한다.	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⑧ 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의
	인권침해를 개선·예방하기 위
	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법무부
	<u>장관, 검찰총장·경찰청장 및</u>
	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
	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
	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
	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.